##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64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 박충권・이인선・최수진

최은석 · 김태호 · 김성원

정동만 · 김상훈 · 고동진

김재섭 · 서지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함)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이들과 교류하는 공무원 등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직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 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 다)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 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4(인식개선교육의 위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ul> <li>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li> <li>하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li> <li>하여야 한다.</li> <li>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li> </ul>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 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 시하여야 한다.
	지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으로 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신 설>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 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제3 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0조의4(인식개선교육의 위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 선교육을 통일부장관이 지정하 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식 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 탁할 수 있다.

-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은 통일부 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 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 다.
- ③ 통일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 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통일부렁으로 정한다.